

#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1996. 5. 7(화)

내 무 위 원 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1996. 5. 1
- 나. 제출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세무과장)
- 다. 회부일자 : 1996. 5. 1
- 라. 상정 및 의결
  - 제4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의회(임시회)
    - 제1차 내무위원회 상정 : 1996. 5. 4
    - 제2차 내무위원회 의결 : 1996. 5. 4

## 2. 제안설명요지(설명자 : 세무과장 최상곤)

- 가. 제안사유
  - 동 감면조례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규정중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여 이견이 많아, 이것을 “당해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명확히 하고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 이중감면을 배제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나.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및 제294조

다. 주요골자

- 본 감면조례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단체, 주택건설업자·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사업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1000분의 3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관리사무소·경비실·공중변소·대피시설…… 등 부대시설과 어린이 놀이터·구매시설·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일반목욕장·입주자집회소, 생활편익시설·유치원·새마을유아원·보육시설·노인정·사회복지관…… 등 복리시설 중

그 일부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 전용면적 40㎡이하의 영구임대주택과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대복리시설”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개정하여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하도록 개정함.

- 본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용면적 40㎡이하의 영구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 중 그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시설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 경우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한하여 과세면제하도록 개정 함.

- 그리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중복감면 배제 조항을 신설

### 3. 검토의견(전문위원 황정근)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중 “부대복리시설”의 개념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용어의 정의) 제6호(부대시설) 및 제7호(복리시설)에 의거 구분함으로써 적용상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50% 경감과 종합토지세의 3/1000으로 분리과세(안 제12조 제1항) 또는 면제(안 제12조 제2항)의 혜택을 부여함과 영구임대주택의 복리시설에 대하여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경우에만 면제토록 하는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공동체의식과 주인의식을 고취하는데 있으며, 중복감면을 배제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6조 신설은 지방세법 제294조(95.12.6 신설)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일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구세감면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반대없음)

#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안 번호	96-17
----------	-------

제출년월일 : '96. 5.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세무과장)

## 1. 제안이유

- 달서구세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 등 보완.

## 2.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 3. 주요골자

- 감면범위 명료화 및 축소
  -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용공동주택 중 당해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한하여 재산세액의 50% 경감,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3/1,000으로 함(안 제12조 제1항)
  - 전용면적 40㎡이하의 영구임대공동주택 중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총당하는 복리시설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함(안 제12조 제2항)
- 중복감면배제(안 제16조)
  - 동일한 과세대상에 2이상의 지방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함.

##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 (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현행	개정 (안)
<p>동산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p>	<p>..... ..... .....</p>
<p>②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 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lt;신설&gt;</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p> <p>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p>